

디지털자산

2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체계내 정식 증권으로 편입되며, 분산원장 기반 발행·계좌관리와 비정형 증권
장외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형성의 법적 골격이 마련됐습니다. 2월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추진과 함께 주요국의 라이선스·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자산을 기존 규율 체계 안으로 재편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질** 것입니다.



DIGITAL ASSET

| C o n t e n t s |

핵심요약	03
I. 1월 국내외 정책 동향	05
1.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정체	07
2. 유럽: MiCA 전환기 종료 임박	10
3. 한국: STO 법안 통과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12
4. 러시아: 디지털자산 문호 개방	14
II. 국내 STO 제도권 진입	15
1. 주요 변화 분석	16
2. 시장 영향 전망	18
III. 2월 주요 일정	20
1. 2월 주요 이슈 전망: 국내	22
2. 2월 주요 이슈 전망: 해외	25

핵심 요약

1월 리뷰:
제도권 편입 가속화 속
국가별 규제 전략 분화

2026년 1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기존 금융, 자본시장 질서 안으로 통합하려는 구조적 전환 단계로 요약된다. 미국은 시장구조법안을 둘러싼 SEC 중심 규제 강화와 CFTC의 산업 친화적 접근이 충돌하며 입법이 지연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유럽은 MiCA 전환기 종료와 DAC8 발효를 통해 인가, 세무 투명성 기반의 정규 금융화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은 STO 법안 통과로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 체계에 편입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연되며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러시아는 금지에서 제한적 개방으로 선화해 재산권 인정과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병행하되 결제수단화는 차단하는 조건부 허용 전략을 택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자산은 규제 밖 자산이 아니라, 각국의 금융-통화 질서 안에서 재정의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시장
형성을 위한 법적 골격 마련

국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은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자본시장법 체계 내의 정식 증권 발행-유통 방식으로 편입됐다.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온체인 기반 증권 발행-계좌관리 인프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장외 다자간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토큰증권 기반 장외시장 형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법률은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요건과 시장 구조는 향후 시행령·감독규정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향후 1~2년간의 후속 제도 설계가 STO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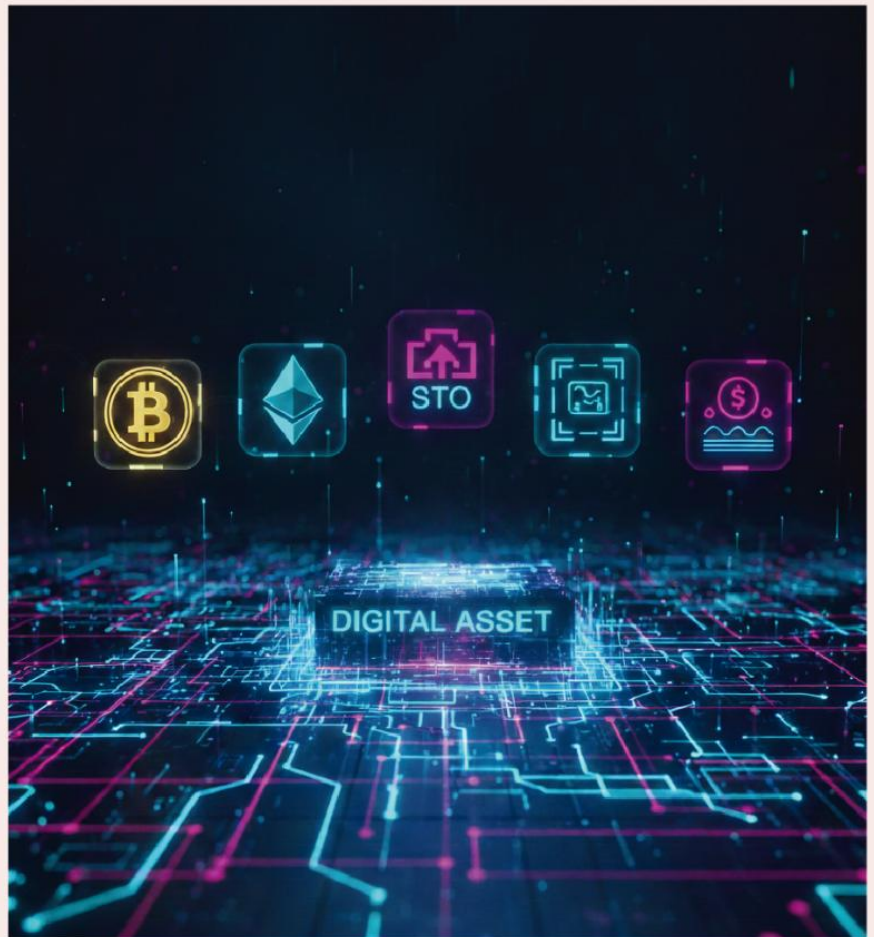
2월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추진, 주요국 라이선스·
규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025년 개별 의원안 형태로 분산 발의됐던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특별법을 통합해, 설 연휴 전 당론 기반의 단일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토큰증권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된 이후,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체제로 규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종합 입법 시도로 해석된다. 1월 28일 전체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 업종을 약 8개로 세분화해 인가-등록 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핵심 규율 방향을 정리했다. 단일안은 업종 인가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방식, 토큰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규율 경계, 거래소 지배구조, ICO 허용 범위 등 주요 쟁점을 포괄하는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예정된 브라질·스위스·호주 영국의 주요 정책 일정은 전액 예치, 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자 건전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이미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규제 원칙을 각국의 시장 구조에 맞게 제도화하는 단계로 해석된다. 브라질은 VASP 인가·감독 체계 가동을 통해 라이선스 기반 시장 재편에 착수하고, 스위스는 발행과 인프라를 분리한 이원적 라이선스 체계를 검토 중이며, 호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향후 본 규제 설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영국은 단계적 인가제와 행위 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 금융 규율 체계 안에 디지털자산을 편입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 페이지입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

1월 국내외 정책 동향

[표1] 1월 디지털자산 정책 동향

국가	날짜	정책 및 법안	진행 단계	내용
미국	2026.01.13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발의	토코의 법적 성격(증권/상품 등)과 감독권(SEC-CFTC) 정리 시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이 쟁점으로 부각
	2026.01.15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연기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와 업계 반발로 마크업(심미 및 표결) 연기
	2026.01.21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상원 농업위원회 수정안 발의	상원 농업위(공화당 측)에서 수정안 공개. SEC-CFTC 권한, 거래소/중개자 규율 등 조문 정비 등 내용 포함
	2026.01.29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상원 농업위원회 마크업 통과	상원 농업위가 12:11로 위원회 통과(당파 표결). 이후 상원 은행위 안과 조율 필요
	2026.02.02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백악관 중재 회의 협상 교착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허용 여부 이견으로 타협 불발
EU	2026.01.01	DAC8	발효(적용 시작)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거래, 고객 정보 보고 의무 부과. 회원국 간 세무정보 자동교환(AEOI) 확대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
	2025~2026.07.01	MiCA	라이선스 종료 임박	MiCA는 2024-12-30부터 CASP 규정이 전면 적용됐고, 각 회원국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 최대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2026년 2월 기준 종료 임박
영국	2026.01.29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사	조사/의견수렴 개시	스테이블코인 성장·규제 설계에 대한 공식 Inquiry(증거 제출 요청) 개시. 마감은 3월 11일 예정
러시아	2026.01.01	디지털 루블 도입	정부 부문 사용 시작	소매 CBDC 전면 도입은 연기됐지만, 정부 부처의 디지털 루블 사용은 2026-01-01부터 허용
	2026.01.29 ~ 2026.07.01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입법 추진	암호화폐 거래 허용하는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 중. 국내 지급·결제 수단 사용은 금지 유지.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 제한 등 자본시장 영역은 제한적 개방
	2026.01.20	헌법재판소 판결 (디지털자산 재산권 인정)	사법 판단	암호화폐를 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 세금 신고 여부만으로 사법적 보호 배제 불가 취지
홍콩	2026.01.30	디지털자산 서비스 규율 확대 개정	입법회 제출 계획 공식 언급	정부(FSTB-SFC)가 거래·커스터디·자문·운용 4개 유형을 포괄하는 규율 체계 법안을 2026년 중 LegCo에 제출 목표임을 명시
베트남	2026.01.20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라이선스	인가 신청 접수 개시	국가증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 창구 오픈. 시범/제도화 단계
카자흐스탄	2026.01.16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	법률 제정(서명)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신규 법률 2건에 대해 대통령 서명 완료
중국	2026.02.06	암호화폐 단속, 규율 강화	정책 강화	암호화폐 관련 활동 억제 기초 재확인 및 규율 강화 보도
한국	2026.01.15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도입, 자본시장법에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등 제도권 편입 근거 마련
	2026.01.28	디지털자산기본법	세부안 조율 중	최소 자본금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윤곽 제시, 지분·소유 제한 등 핵심 쟁점은 이견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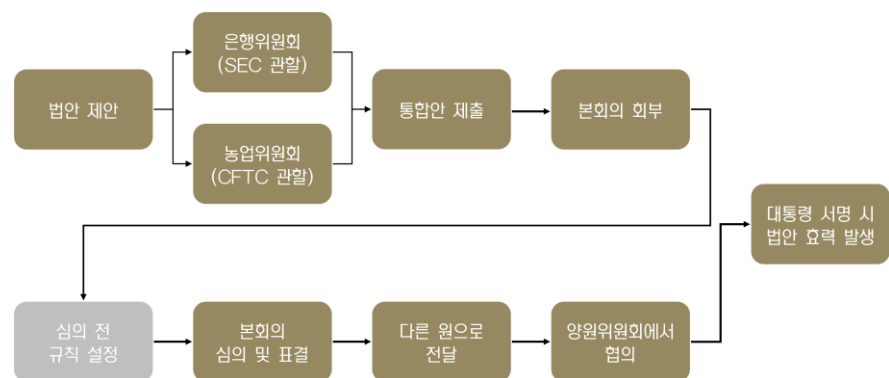
1.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정체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공개

2026년 1월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됐으나, 위원회 간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수정안을 공개하고 일부 절차를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부재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발표한 법안 수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증권 규제 체계에 보다 넓게 편입시키는 방향이었다. 토큰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증권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SE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한다. 전통 금융권과 규제당국은 명확한 책임 주체와 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 업계는 혁신 저해 및 미국 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림1]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통과 과정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코인베이스의 반대

코인베이스는 은행위의 수정안에 크게 반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조항에 있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하면 안된다고 명시한다. 기존 GENIUS 법안이 발행사의 이자 지급만 금지했다면, 시장구조법안은 거래소/브로커 등 DASP가 자체적으로 보유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며 우회 수익 제공을 원천 차단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 예금 이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 국채 및 현금성 자산 운용 수익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자 지급을 전면 제한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매력이 저하되고, 이용자와 자본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은행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경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위 수정안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사전 정의하기보다 규제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토큰의 기능과 탈중앙화 수준, 네트워크 성숙도를 고려한 명확한 시장구조 구분 없이 SEC의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SEC와 CFTC 간 관할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 규제 중심 접근이 강화될 경우,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출시와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표2]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법안 비교

구분	GENIUS Act	상원 은행위 시장구조법안 초안
이자/수익 금지 대상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수익 지급 금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가 보유만으로 이자/수익 지급 금지. 거래소/중개자까지 확장
활동 기반 예외	제 3 자/거래소 리워드에 대한 명시적 허용 조항은 없음. 우회 방식에 대한 논란 가중	예외를 조문에 직접 열거: 거래/지급/송금/정산, 지갑/플랫폼 사용, 로열티/프로모션, 유동성/담보 제공, 거버넌스/검증/스테이킹 등
마케팅 규제	발행사 명칭 관련 정부 보증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제한	리워드를 예금/FDIC/무위험/은행예금이자 유사로 표현 금지, 누가 지급하는지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 누락도 금지
은행 예금 유출 논쟁	정책 논쟁의 원인이 됐던 제휴/제 3 자 리워드는 법이 직접 다루지 않아 논쟁 지속	예금 유출 영향 보고서(연준/OCC/FDIC) 제출 의무화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그 외 반대 조항

쟁점	초안 내용	코인베이스 우려
DeFi 과도 규제	SEC.301: non-DeFi 로 간주되는 프로토콜 운영 주체에 대해 증권법상 등록, 기록, 감독 및 기존 법에 따라 BSA 기반 AML/CFT 적용/집행	디파이 혁신/운영 부담 증가
디파이 프론트엔드 제재 /AML 의무	SEC.302: Distributed ledger application layer 에 대해 제재대상 주소 식별, 제재 거래 차단, AML/CFT 관리 등 의무	단순 인터페이스/프론트엔드도 제재, AML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과도 규제
CFTC 권한 약화	법안 곳곳의 "Commission 이 정하는 규칙/정의/빈도"가 기본적으로 SEC 의미 CFTC-SEC 공동 규칙/위원회/협의 구조가 반복	실무에서 SEC 가 우위처럼 해석될 여지 현물은 CFTC 라고 못 박기보다 공동관할/조정으로 관할 다툼, 중복 규제 리스크 존재
토큰화 주식 제한	SEC.505: 토큰화 금융상품은 기존과 똑같이 증권/파생 규제 준수 동등한 경제적/법적 권리를 주지 못하면 주식과 동등하다고 마케팅/판매 금지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토큰화해도 증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토큰화 저해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원 농업위원회 마크업 통과

이러한 반발과 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마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시사하며, 단기간 내 상원 통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을 주로 상품으로 분류하고 CFT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산업 친화적 접근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SEC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수정안은 제한적인 형태로 마크업을 통과하며 상원 내 논의가 일정 부분 진전을 보였다.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종합적으로 볼 때, 1월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논의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민주당과 공화당,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입법 지연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름 이후 입법 동력이 약화될 것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내 통과가 필요하다.

[표4]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비교

구분	상원 농업위원회	상원 은행위원회
관할 기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SEC(증권거래위원회), FED(연방준비제도)
관할 자산	디지털 상품(비트코인 등 증권성 없는 상품)	디지털 상품(CFTC 관할), 지불형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토큰(조건 충족 시 비증권 취급), 부수형 자산(네트워크 토큰 중, 가치가 발행자의 기업가적·관리적 노력에 의존, SEC 관할)
핵심 규제 내용	CFTC에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 부여	기관 간 협력을 전제로 한 역할 분담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CFTC와 SEC 관할로 구분(관할권을 나누고 있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두 기관간 협의체와 공동 시장 감시)
	거래소의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및 수탁 규정 수립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사업자 카테고리(거래소, 브로커, 딜러, 수탁기관) 세분화 및 자본금 요건과 운영 기준 준수 강제	디파이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하는 중앙화 중개기관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 적용 요구
	부가 서비스(스테이킹 등)의 강제 결합 금지	자금세탁방지(AML) 표준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및 거래소의 자기매매 금지	연준의 직접 감독권 강화
진행 현황	2026.01.29 상원 농업위원회 마크업 통과	암호화폐 업계 반발로 인한 심의 일시 중단 및 연기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유럽: MiCA 전환기 종료 임박

MiCA 유예기간 종료 임박

1월 유럽 디지털자산 시장은 규제 준수를 통한 제도권 안착과 시장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라는 흐름 속에 있다. MiCA는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법으로 2024년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됐고, 2024년 12월 30일부로 전면 시행됐다. 국가별로 구체적인 시점은 다르지만 최대 올해 7월 1일까지 기존에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CASP)은 새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EU 전역에서 영업을 중단된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요 거래소 및 암호화폐 기업들은 인가를 준비 중이다. 바이낸스는 유럽 MiC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스에서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통적인 금융 허브인 몰타나 룩셈부르크 대신 그리스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리스는 허가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간소화된 절차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규제 환경을 갖고 있어 새로운 암호화폐 사업지로 주목 받는다.

프랑스 금융당국(AMF)은 6월 30일 유예-전환 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약 30% 기업이 MiCA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40%는 공식적으로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30%는 아직 계획조차 규제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규제 비용 및 자본 요건이 높아 중소 기업들은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형 거래소들은 MiCA 프레임워크에 맞춘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을 통해 EU 전역에서 규제 준수 기반 영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비가 미흡하거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 업체는 시장 퇴출 또는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이 일부 관찰된다.

[표5] MiCA 국가별 라이선스 취득 기한

구분	라이선스 취득 기한	국가
6개월	2025년 06월 30일	라트비아,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9개월	2025년 09월 30일	스웨덴
12개월	2025년 12월 31일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EEA)
18개월	2026년 07월 01일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 포르투갈, 벨기에, 아이슬란드(EEA), 리히텐슈타인(EEA)

자료: ESM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암호화폐 세금 투명성 법안 발효

2026년 1월부터 EU의 암호화폐 세금 투명성 법안인 DAC8이 발효됐다.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RCASP)들이 거래, 사용자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회원국 세무당국끼리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1월 1일부터 EU 거주자 관련 보고 대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시작됐다. 첫 보고 제출 시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고 2026년 거래분에 대한 것이다. 회원국 일부는 지침에 따른 국내법 전환을 제때 하지 못하며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법 전환이 늦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위반 절차로 시정 요구를 보낼 수 있고, 국가별 시행 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결국 일정 시차를 두고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 대상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돼 있지만, 범위가 셀프 커스터디 지갑 출금, 거래소 밖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핵심은 세무당국이 온체인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관여하는 흐름을 보고한다는 점이다. 보고 대상 거래는 크게 교환과, 이전이 있다. 고객이 거래소나 수탁업체(RCASP)에 보관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면 이 이전을 RCASP가 실행, 중개한다. 이번 지침은 고객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출금해 세금을 추적하지 못하는 구간을 줄이기 위해 RCASP가 수행한 출금까지 보고하게 만들었다.

과거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면 과세 추적이 약해지는 구간이 컸다. DAC8은 매매뿐 아니라 이전까지 보고 대상으로 넣어, 과세당국이 연결고리를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거래소 밖 거래 중에서도 RCASP가 관여했을 때만 보고 가능한 영역이다. 순수 온체인 P2P 거래나 DEX 활동으로만 끝나면 의무 보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자동 보고 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 영역의 맹점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EU 내 서비스를 사용하면 거래, 출금 흐름이 세무당국에 포착되기 때문에 향후 미신고 리스크가 커질 것이며 세금 보고를 전제로 한 거래가 표준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의 유럽은 규제가 곧 경쟁력이 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이 보장되겠지만, 기업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됐다. 이제 유럽에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회색지대의 자산이 아니며, 전통 금융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하에 놓이게 됐다.

[표6] DAC8(유럽 암호화폐 조세 지침) 핵심 준수 요건

구분	주요 내용 및 준수 요건
고객 실사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KYC(본인 확인)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보고 대상 사용자를 식별 및 검증 의무 개인 정보 및 조세 거주지 정보 수집 포함
거래 보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교환, 전송, 판매 등 모든 관련 거래 내역을 EU 세무 당국에 보고
국가 간 데이터 공유	수집된 정보는 공통 보고 표준(CRS)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 간에 자동 공유
비EU 사용자 검증	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EU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비EU 기업이라도 검증 및 보고 의무 발생
데이터 보관 및 보안	플랫폼은 사용자 신원 및 거래 데이터를 최소 5년간 안전하게 보관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수
미준수 시 제재	DAC8 요건 미충족 시 과액의 벌금 부과, 규제 당국의 조사 및 기업 평판 훼손 등 강력한 제재 가능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한국: STO 법안 통과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STO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토큰증권 (Security Token Offering, 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 준비의 첫 관문을 넘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논의는 확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연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성격과 산업적 파급 경로가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과 발행, 유통 관련 규율의 자본시장법 체계 내 편입이 있다. 전통 증권 시장과 디지털자산 기반 증권 시장 사이의 법적 연계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했다. 전자 등록, 양도, 대체 거래 등 증권 행위가 토큰 형태로 이뤄질 경우,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법안 통과는 STO가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본 시장 인프라의 정규 축으로 편입되는 신호다. 특히 실물자산 토큰의 발행, 유통이 기존 자본 시장과 결합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국내 금융 시장도 디지털자산에 관한 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 지속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1월에도 확정되지 못한 채 조율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초 발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지배구조 등 주요 핵심 조항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관련 논쟁이 심화되며 2단계법 전반의 조율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선호하는 반면, 여당 및 시장 참여자들은 진입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단계법 논의 지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지배구조, 유통, 법적 책임, 소비자 보호 등 검토 과제가 1월 정책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STO 법안은 통과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연되며 국내 디지털자산 법안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STO는 명확히 자본시장 상품의 범주로 재정의되며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넓은 범위의 산업과 서비스를 규제하기 때문에 정책 범위가 더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등 다원적인 측면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율에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1월 국내 디지털자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STO 법안의 제도화와 기본법 논의의 지속적 지연이었다. STO 법제화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규제 결합을 이뤄 내며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후자는 스테이블코인 등 실무적, 체계적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제화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이후에도 기본법 조율, 발행주체 논쟁,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책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7]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구분	주요 쟁점	핵심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또는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 논의
지배구조	거래소 소유 제한	거래소 독과점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검토
시장 개방	법인 투자 허용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직접 투자 허용을 통한 시장 참여 확대
상장/공시	발행인 공시 의무	암호화폐 백서 등록, 토큰 분배·재무현황 등 정기 공시 체계 구축
자산 분류	STO-디지털자산 경계	증권형과 비증권형 자산의 분류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사각지대 방지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의 핵심 전제 조건 해결
전통 금융	은행권 진입 허용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중개, ETF-토큰증권 관련 업무 범위 확대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러시아: 디지털자산 문호 개방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추진

1월 러시아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성은 금지에서 제한적 개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정부·의회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 사법부의 재산권 인정, 그리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며,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국내 지급,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하는 구조다.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문호를 열되, 통화주권 훼손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합의점으로 해석된다.

개인(비전문 투자자)에 대해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테스트 통과 후 연 30만 루블 한도로, 단일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가장 유동성 높은 코인 거래만 허용된다. 적극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차등 구조다. 시장 개방과 동시에 투기적 과열을 관리하려는 리스크 통제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익명성 기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 역시 유지된다.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책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문호 개방은 무제한적 자유화가 아닌, 감독 강화 전제를 둔 조건부 허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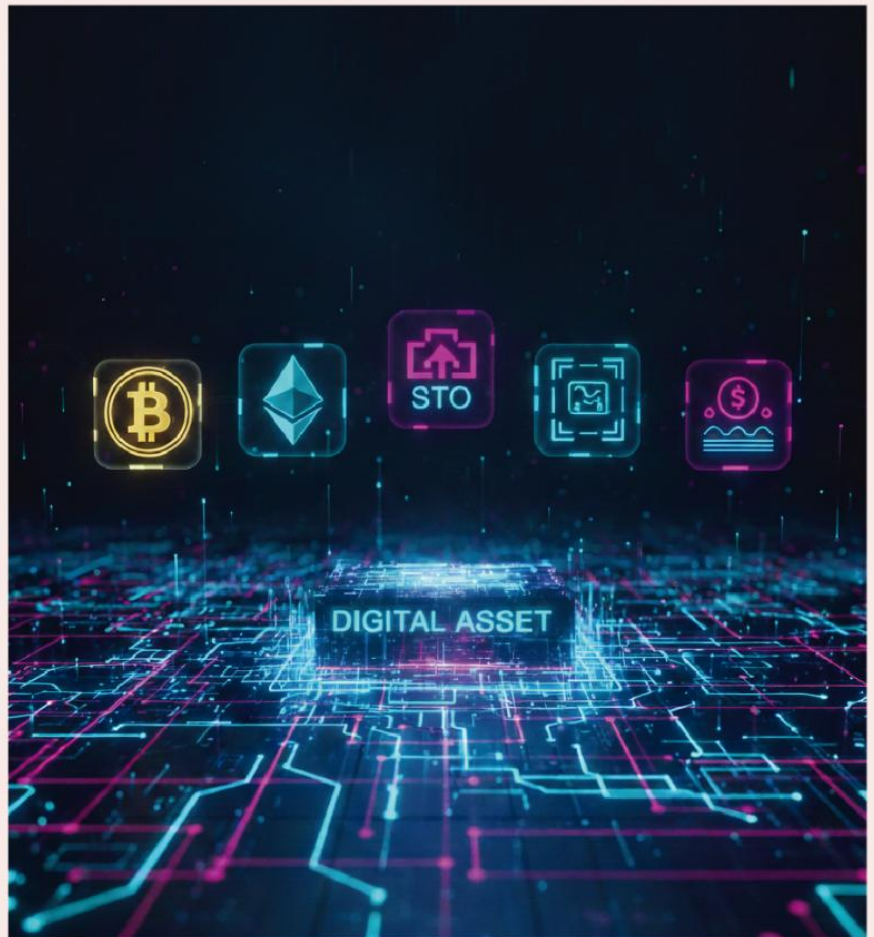
암호화폐의 재산권 인정

디지털자산의 지위도 변화하고 있다. 1월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암호화폐를 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기존 2020년 디지털 금융 자산법 체계에서는 암호화폐의 자산 성격이 모호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지위를 사법적으로 명확히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채권, 채무 분쟁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으며, 세금 신고 의무를 이유로 재산권 보호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됐다. 향후 암호화폐 관련 민사, 상사 분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 측면에서 단순한 시장 허용을 넘어, 암호화폐를 제도권 재산 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구조적 신호로 해석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정책 정비와 함께 제도권 금융기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Sberbank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상품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고객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루블화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단순 투자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 내 담보 자산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oscow Exchange와 Saint Petersburg Exchange 등 주요 거래소는 규제 준수형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비공식, 역외 중심이던 암호화폐 거래를 국내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은행과 거래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개방이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인프라 구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이번 정책 전환은 국제 제재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망과 분리된 가치 저장 및 이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를 무제한 허용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제도권 플랫폼 내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II

국내 STO 제도권 진입

1. 주요 변화 분석

전자증권법: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 제도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은 규제 샌드박스 단계에서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새로운 증권 발행·유통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되며,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은 세 번째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 때 토큰증권은 디지털 형식일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전제되기 때문에 공시, 인·허가,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존 증권 규제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은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분산원장과 분산원장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분산원장은 거래와 권리 변동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정보가 기록되고, 다수의 참여자가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기술적 조치를 통해 기록의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이 방지되는 장부·관리체계로서 전자등록 시스템에 편입된다. 또한 이러한 분산원장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은 분산원장 등록주식으로 규정돼 온체인 기반 계좌부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발행 인프라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10억 원 이상, 구체 금액은 시행령 위임), 관리자 보호에 충분한 인력·전산·물적 설비,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 임원·대주주의 적격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발행 주식 등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자기자본과 대주주 요건 등 핵심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충족, 업무 미수행, 파산 등 시 금융위원회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 인프라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하도록 해 계좌관리의 온체인화를 유도한다.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자기계좌부의 작성·관리 책임 주체,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고객계좌부 열람·출력·복사 의무,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과 기존 전자등록주식 간 전환 절차 등도 함께 규정돼 있어, 기존 증권과 토큰증권 간 호환성 및 총량 관리 체계도 함께 설계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신용정보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조항 역시 향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상 물리적 파기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분산원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파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었다. 동시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전자등록계좌부상의 증권 수량이 실제 발행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정정·해소하고,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원장 기반 증권등록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운영상의 리스크를 재무적 완충장치로 흡수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또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분산원장 이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산원장 활용 의무와 이용 기준 준수에 대한 규제 강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자본시장법: 비정형 증권의
유통을 제도화

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구조의 증권으로, 국내에서는 미술품 등 일부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조각투자 사례가 등장했으나, 정식 자본시장법상 유통 인프라가 부재해 증권사를 통한 체계적인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기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본다”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범주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정식 유통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 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 다자간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장외거래 규정을 도입해,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이 증권사를 매개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다자간 장외거래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장외거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규정(일부 겸영업무 제한과 투자권유대행인·신용공여 관련 규정)을 인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해, 토큰증권 기반 장외거래소 모델에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 목적·투자 경험·증권 종류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토큰증권 장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시행 시점과 후속 제도 설계

시행 시점과 후속 제도 설계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법률 레벨에서의 큰 틀을 먼저 깔고, 세부 구조는 향후 협의체와 시행령·감독규정에서 조정한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잠정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설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인가 요건의 구체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투자한도, 적합성·적정성, 공시·보고 의무 등)가 단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 참여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며, 실제 시장 구조와 사업자 구도는 이 협의 과정과 이후 인가심사 실무를 통해 상당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법 개정은 STO 제도화의 “골격”을 마련한 단계로 볼 수 있고, 향후 1~2년간의 세부 규정·인가 심사 방향이 국내 STO 시장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 영향 전망

>> 업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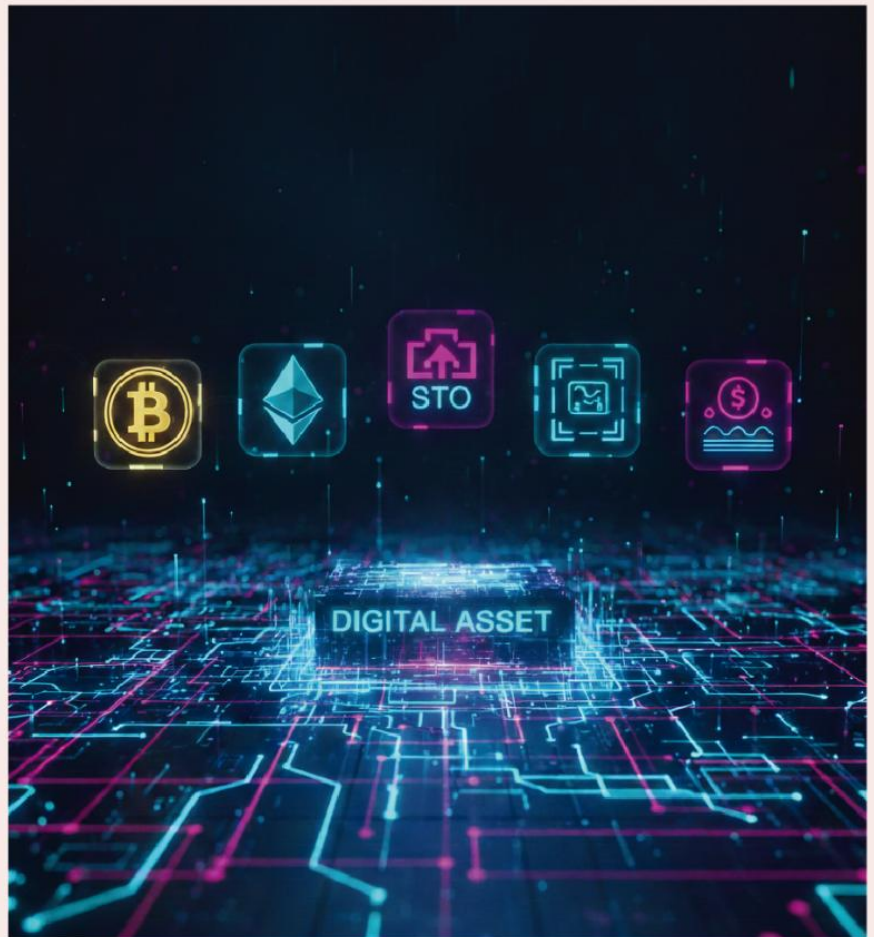
이번 개정은 토큰증권을 규제 샌드박스 중심의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단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차원에서 분산원장 기반 증권발행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의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증권사·금융투자업자뿐 아니라 IT·핀테크 기업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플랫폼에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동시에 조각투자,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이 기초자산·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및 인센티브 구조를 온체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시범 수준에 머물렀던 다양한 투자 모델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 장외거래 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공시 및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는지가 향후 시장 신뢰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유통 인프라와 사업자 구도 재편 역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새로운 인가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투자중개업(장외거래중개업 포함) 인가 절차와 복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장외거래소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투자중개업자의 사업 형태 허용 범위(발행·인수·자기매매 가능 여부), 장외거래소의 시장감사·결제·청산 구조, 분산원장 인프라의 안정성 및 보안 요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증권사가 주도하는 중앙집중형 플랫폼 구조가 형성될지, 분산원장 기술 역량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역할이 분산된 구조가 형성될지에 따라, 시장 경쟁 구도와 서비스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인가를 받은 소수의 인프라 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초기 시장에서는 대형 금융투자업자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술·운영 측면에서는 분산원장 도입을 통해 증권 계좌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데이터 수정·삭제 내역의 추적 가능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리 변동 기록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이자·배당·원금 상환, 콜옵션·풋옵션 행사 등의 자동화도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권리 설계의 유연성과 자동 실행 가능성이 높아,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STO, 리츠·펀드형 토큰증권, 수익공유형 투자계약증권 등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운영, 보안·키 관리, 개인신용정보 관리, 초과분 해소 재원 적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관련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 중기 성장 시나리오

중기적으로는 이번 개정이 국내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큰증권이 단지 새로운 틈새상품이 아니라, 기존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의 디지털 발행·유통 방식으로 확산될 경우, 크로스보더 토큰증권 발행, 외화표시 채권·펀드의 온체인화, 국내외 투자자 대상의 글로벌 STO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세부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장외거래소 인허가 및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자의 인가 범위에 대한 심사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제도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향후 1~2년을 “제도 설계와 인가 구조를 관찰하면서, 기초자산·상품 구조, 온·오프체인 설계, 파트너십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준비기”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III

2월 주요 일정

[표8] 2월 디지털자산 정책 일정

국가	날짜	정책 및 법안	내용
한국	2026년 2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2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반 디지털자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통합 규율,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 의사결정 구조 등이 핵심 쟁점이며,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속도에 따라 입법 진척이 좌우될 전망
브라질	2026년 2월 2일	BCB Resolution 519, 520 호	VASP의 설립·영업·규제 프레임워크와 인가·전환 절차를 규정한 중앙은행 결의. 520호는 구성·운영·AML/CTF·건전성 기준, 519호는 전환·인가 절차를 규정하며 두 규정 모두 2026년 2월 2일 발효
스위스	2026년 2월까지	금융시장법 개정 의견수렴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진행하는 공개 의견수렴 절차. 새로운 라이선스 카테고리 ① 결제수단 발행기관, ② 암호화폐 기관(커스터다·조직화된 거래시스템 운영 라이선스)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
호주	2026년 2월 6일	강화형 규제 샌드박스 피드백 제출 마감일	2025년 12월 재무부가 강화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독립검토·공개협의를 개시. 핀테크·디지털자산 사업자의 테스트 가능 서비스·상품 범위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 5월 중순 정부에 최종 권고안이 제출될 예정
영국	2026년 2월 중	Future Entity for Open Banking 평가 프로세스 시작	FCA가 2026년 1월 공개한 서한에 따라, 오픈뱅킹 API 표준을 담당할 "Future Entity" 선정을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2월부터 시작할 계획. 업계가 제시한 후보안에 대해 FCA가 적합성을 검토하며, 이후 해당 기관을 결정할 예정
	2026년 2월 12일	FCA CP25/40, CP25/41, CP25/42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12월 발표된 FCA 암호화폐 컨설팅 3건(활동 규율, 상장·공시·시장질서, 건전성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 제출 마감일이 2월 12일. CATP(거래플랫폼) 인가·UK 실체 요건, 스테이킹의 규제 범위 편입, 암호화폐 전용 공시·시장질서 체계, 건전성 규제 등 핵심 설계에 대해 업계 피드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2026년 2월 4일 신청 마감 2월 13일 선정 통지	FCA Stablecoin Sprint	FCA가 2026년 3월 스테이블코인 스프린트와 5월 무역결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예고. 참여 희망 기관은 2월 4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 13일까지 스프린트/라운드테이블 참가 선정 결과를 통보받게 됨. 논의 내용은 2026년 중반 발행자 규칙 확정에 반영될 예정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2월 주요 이슈 전망: 국내

국내 2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설 연휴 전 민병덕(의안번호 2210736), 안도걸(2211784), 김현정(2212298), 이강일(2213166), 박상혁(2214492)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특별법들을 통합해 당론 형태의 단일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TF는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업종별 규제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정리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분산적으로 제출됐던 여러 의원안과 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간 협의안을 정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산업 규율 체계를 둘러싼 당내 입장을 공식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는 점에서 이번 단일안은 "자본시장법 체계 안으로 들어간 토큰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등)"의 역할과 규제 경계를 재정렬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공통적으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지만,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협회 거버넌스, 거래소 거래지원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 영역에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민병덕 의원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 기반의 경제적 가치 보유 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수탁·브로커리지·시장조성 등 자본시장형 인프라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로, 디지털자산을 가장 세분화(10개 업종 수준)하고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까지 뒤 향후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둔다. 안도걸 의원안은 RWA와 토큰증권, 인프라 등 자본시장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등 STO 영역과의 접점을 의식한 설계를 취하고 있어 발행·공시·자산보관·청산 구조 등 금융투자업과 접목된 규율이 상대적으로 상세하다. 김현정 의원안은 영업행위 규제, 광고·권유 제한, 예치금·예탁자산의 별도 신탁·예치,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에서 투자자 보호와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이강일 의원안은 GENIUS 법과 MiCA 등 해외 입법례를 폭넓게 참조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심의기구로 설치하고, 한국은행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료요구, 공동검사 및 발행중지 의견 제시 등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거버넌스·감독체계와 국제정합성에 초점을 둔다. 박상혁 의원안은 AI·데이터·디지털금융 정책과 디지털자산 규율을 통합하는 접근을 취해, 알고리즘 투명성, 자동화 의사결정,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모델·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 기술 요소를 동시에 다루는 '테크·AI 연계형' 기본법에 가깝다.

[표9] 국내 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주요 내용

의원안	법안 성격	키워드
민병덕 의원안	디지털자산 정의 및 업권 체계 정립	분산 원장 기반 자산 정의, 디지털자산업 세분화, 거래/수탁/브로커리지/시장조성 포함, 인가/등록/신고 3 단계 진입 규제, 예치금/예탁자산 별도 신탁 의무
안도걸 의원안	자본시장 연계형	RWA 중심 설계, 토큰증권 인프라 강조, 발행/공시/보관/청산 구조 구체화, 금융투자업 규율과의 정합성 중시
김현정 의원안	이용자 보호 중심	영업행위/광고/권유 규제 강화, 예치금/예탁자산 분리 보관, 분쟁조정 메커니즘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연계, 불공정행위/정보비대칭 최소화
이강일 의원안	감독체계 강화	해외 입법례 참조,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한국은행 권한 강화, 국제정합성 중시
박상혁 의원안	테크, AI 연계형	AI/데이터/디지털금융과 통합 접근, 데이터활용/모델 리스크 관리,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시스템 리스크 규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단일안 이슈:
업권 분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감독권한,
거래소 지분 제한,
ICO 허용 요건

1월 28일 TF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자산 업종을 가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하고,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폴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차등화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원)을 준용한 것이다. 셋째,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 '가상자산 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한국은행 부총재보·재정경제부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인프라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예정이다. 넷째,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당초 한국은행 측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사실상 veto 권)를 요구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금융위-한은 간 '협의' 절차를 활용하는 '합의제'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TF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세부 쟁점들이 향후 법안 조문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8개 업종 중 '인가' 대상이 되는 2~3개 업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민병덕 의원안 등에서는 '디지털자산매매업·중개업·보관업'을 인가 대상으로, '지갑관리업·자문업' 등을 등록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TF 단일안이 이 구조를 계승할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별도 인가 업종으로 분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정부안에서는 매매·중개·보관업 각 업무 단위별로 최소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복수 인가 단위를 동시에 취득해 한 사업자가 총괄하는 구조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어, 단일안의 자본금 겸영 구조도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은 자본금 50억 원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 설계 논의가 불가피하다. 당초 TF 회의에서는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에 발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중재안을 중심으로 추가 협이가 진행됐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대거 수용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구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이 입법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와 대주주 지분 규제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 쟁점의 귀결에 따라, ① 은행 주도 합작법인만 발행이 허용될지, ② 전자금융업자가 가상자

산사업자의 소수 지분 참여가 일부 허용될지, ③ 준비자산의 중앙은행 예치 의무나 외부 감사·공시 주기 등 규율 강도는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토큰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규율 경계도 법안 조문에서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정부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율"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특정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증권성 판단 전 발행·유통 단계에서의 임시 규율 방안 등이 단일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용 가치안정형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별도 카테고리 두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체계와의 접점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15%) 도입 여부나 국내 ICO 허용 범위 및 요건도 TF 차원에서 정부·여당 정책위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단일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특히 ICO와 관련해서는 발행 주체를 일정 요건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하고, 기업이 코인을 발행할 경우 프로젝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프로젝트 심사 및 공시 체계의 정교화와 투자자 보호 수준의 제고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신뢰도가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반의 성장 경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2월 주요 이슈 전망 해외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각국 제도에 구현하는 단계
진입

2월 예정된 브라질, 스위스, 호주, 영국의 이벤트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들—예치자산 보관, 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자 건전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각국의 시장 구조에 맞게 실제 제도로 구체화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브라질은 2월 2일 BCB Resolution 519·520호가 발효되면서 VASP 인가·감독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2025년부터 스테이블코인·커스터다·공시와 함께 중개업자·거래소·수탁사에 대한 건전성 및 운영탄력성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흐름이 뚜렷하며, 브라질은 이러한 제도화를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519호는 기존 사업자의 전환·인가 절차를, 520호는 AML/CTF·자기자본·유동성 등 건전성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무규제 고성장’ 국면에서 ‘라이선스 기반 재편’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는 브라질이 기관 및 글로벌 플레이어가 진입 가능한 규제 허브로 포지셔닝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소수의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면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도 내포한다.

스위스는 2월까지 진행되는 금융시장법 개정 의전수립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① 결제수단 발행기관과 ② 크립토 기관(커스터다·조직화된 거래시스템 운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는 여전히 친(親)크립토 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규제 공백의 피난처’로 보기는 어렵다. 결제형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결제 인프라는 결제수단 발행기관 라이선스 아래 두고, 커스터다·거래 인프라는 크립토 기관 라이선스로 관리하는 이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스위스에서 발행·거래·커스터다를 아우르는 풀스택 전략은 규제 및 자본비용 측면에서 점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호주는 2월 6일 강화형 규제 샌드박스 피드백 마감을 앞두고 있다. 2026년 규제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를 라이선스 체계에 내재화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여지는 유지하는 데 있다. 호주 재무부가 검토 중인 내용 - 테스트 가능 서비스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SME 지원 강화 - 은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 샌드박스가 더 이상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실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본 규제의 세부 설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적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샌드박스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발행자 요건, 투자자 분류, 공시 의무 등 향후 정식 규제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2월 1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김유민)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